

#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특별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존립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단과대학·학부(과)의 구조와 정원 조정 등 대학구조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대학구조조정”이란 단과대학·학부(과)·전공의 신설, 통합, 폐지, 명칭변경, 정원의 증원 또는 감축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를 말한다.

**제3조(대학구조조정의 원칙)**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
2.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
3.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
4.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

**제4조(대학구조조정관련 조직 및 절차)** ① 대학구조조정은 평가실에서 관장한다.

② 대학구조조정은 새 학년도 등록 마감 후 안을 수립하여 매 학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
③ 평가실에서는 대학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부서와 단과대학에 요청할 수 있으며, 각 부서 및 단과대학은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④ 평가실에서는 제2항의 안을 작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⑤ 평가실에서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안의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지정된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5조(대학구조조정의 기준)** ① 학부(과)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육성 분야로 하며, 입학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신설한다.

② 정원은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.

③ 대학구조조정 대상 학부(과)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해당졸업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이 2년 연속 전국 학부(과)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

2. 재학생 충원률이 본교 평균 충원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. 다만, 신설학부(과)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3. 학부(과)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20%에 속할 경우

4. 신입생 등록률이 학부(과)정원의 80%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과할 수 있다.
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학 특성화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폐직 및 과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은 다른 학부(과)로 소속변경 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정한 소속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형태, 업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할 수 있다.

⑥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학과폐지 결정은 1학기 개시 후,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, 폐지 결정이 된 학과는 학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과를 유지하며,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적용)** 본 규정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본 규정에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